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윤리적 소비 욕구 증대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를 법률에서 정하는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신설,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1조~제57조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지급 대상 축산물 및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제51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이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52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동물복지축산직접

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축산의 실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3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5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4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55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54조에 따른 신청인이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55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동물보호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55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56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동물 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5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물복지축산직 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제55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 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를 제72조로 하고, 제58조를 제65조로 한다.

제59조를 제66조로 한다.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하고, 제51조 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로 한다.

제63조(종전의 제56조) 본문 중 “제53조제4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 및 제64조를 각각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61조)제4항 중 “제62조”를 “제69조”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62조) 제2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7조”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제61조제3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중전의 제64조) 제1항제8호 중 “제50조까지”를 “제57조까지”로 한다.

별표 5 중 “(제60조제2항 관련)”을 “(제6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중 “(제65조 관련)”을 “(제72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절</u> <u>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u> <u>제51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이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u>

<신 설>

<신 설>

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
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52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의 지급대상 축산물) 동물복지
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
한 동물복지축산의 실현을 고려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53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의 지급기준) ① 동물복지축산
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동물보
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인
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
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
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
해 1회당 3천만원으로 하고, 지
급대상 축산물을 제55조제1항

<신 설>

<신 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4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55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54조에 따른 신청인이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 설>

<신 설>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
청장등은 제55조에 따라 동물복
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로 선정된 자에게 동물복지축산
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
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동물복지
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55조제1항에 따
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 경
우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확
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동물보호법」 제
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
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55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56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5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제51조 ~ 제55조 (생략)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7조 ~ 제59조 (생략)

제60조 (생략)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55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 제62조 (현행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와 같음)

제63조(수당) -----
----- 제60조제4항-----

--. -----

--.

제64조 ~ 제66조 (현행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와 같음)

제67조 (현행 제60조와 같음)

제61조(지도 등) ① ~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환수,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제한 등

제68조(지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69조-----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57조-----

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4. (생략)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 (생략)

제63조 (생략)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

4. (현행과 같음)

③ ----- 제68조
제3항-----

--.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

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	-----
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	-----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8. -----
제4장(제20조부터 <u>제50조까</u>	----- <u>제57조까지</u> -
<u>지</u>)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
지급에 관한 사무	-----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65조</u> (생 략)	<u>제72조</u> (현행 제65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연 락 처	(044) 201 - 2635